

| |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| 제2829호 |
| 의결 연월일 | 2024. . . (제 회) |

| | |
|------|--|
| 의결사항 | |
|------|--|

고성군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

| | |
|-------|--------------|
| 제출자 | 고성군수 |
| 제출연월일 | 2024. 8. 27. |

고성군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

| | |
|----------|--------|
| 의안 번호 | 제2829호 |
|----------|--------|

제출연월일: 2024. 8. 27.

제출자: 고성군수

1. 제안이유

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과 가족·공동체 육아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공동육아나눔터3호점 위탁 운영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2. 위탁근거

- 가.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(공동육아나눔터)
- 나. 고성군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(공동육아나눔터 위탁 운영)
- 다.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제8조(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)
- 라.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(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)

3. 위탁내용

- 가. 위탁 대상: 고성군공동육아나눔터 3호점
- 나. 위탁 기간: 2025. 1. 1. ~ 2029. 12. 31.(5년)
- 다. 선정 방법: 공개모집 공고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결정
 - 1) 신청 자격: 신청일 현재 주사무소가 고성군에 소재를 둔 아래와 같이 해당하는 법인 및 단체
 -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사회복지법인
 -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
 - 비영리법인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의한 비영리 단체

※ 공고 2회까지 고성군 소재 법인의 신청 및 수탁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3회차 부터 신청자격을 경상남도로 확대함

라. 위탁사무내용

- 고성군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운영

마. 소요예산: 56,712천원 정도(2024년 공동육아나눔터 내시 기준)

4.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

가.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

- 수요자(보호자)의 욕구 및 선호도가 다양하여 민간주도의 전문성과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사업 진행등의 유연한 대처 필요
- 민간 위탁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양육 공동체 기반 조성 필요

나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
- 행정 주도의 서비스 공공성보다 민간의 다양성, 전문성 및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민간위탁 운영이 필요하며, 위탁단체의 서비스 공급에 소요되는 예산지원을 통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.

다. 경제적 효율성,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

- 해당 사무는 비영리사무로 양육에 대한 국가·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강화

라.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

- 공동육아나눔터는 아이와 보호자를 위하여 공공성과 안정적인 서비스가 요구되는 동시에, 특색있는 프로그램 기획 및 시설관리가 요구됨.
- 따라서 민간의 전문단체 위탁 운영으로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 및 다양성이 기대됨.

마. 성과 측정의 용이성

- 서비스 이용률, 예산의 집행률,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수탁

자의 운영능력 등 성과측성 용이

바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
- 고성군공동육아나눔터 3호점은 사회복지시스템으로 관리하여 보
조금의 정산, 예·결산 정보공시 및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관
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

5. 위탁사유: 민간의 전문성, 운영의 안정성, 프로그램 활성화 제고

6. 기대효과

- 가. 민간 전문업체 선정·운영으로 고성군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운영의
연속성과 전문성 확보로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양육 프로그램 제공
나. 지역내 민간단체 선정을 통한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 제고로
지역주민의 이용 활성화와 부모·아이가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 기대

7. 추진일정

- 가. 민간위탁 공고 및 접수 : 2024. 10.
- 나.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 및 개최 : 2024. 11.
- 다. 수탁기관선정 : 2024. 11.
- 라. 협약체결 : 2024. 11.
- 마. 운영을 위한 기타 제반준비 : 2024. 12.
- 바. 위탁운영 : 2025. 1.

- 붙임 1. 추진계획 1부.
2. 관련법령 1부.

| | |
|------|--------------|
| 등록번호 | 교육청소년과-23384 |
| 등록일자 | 2024. 8. 26. |
| 결재일자 | 2024. 8. 26. |
| 공개구분 | 비공개(5) |

| | | | |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보육돌봄담당 | 교육청소년과장 | 행정복지국장 | 부군수 | 군수 |
| 김민정 | 천미옥 | 최낙창 | 박성준 | 2024. 8. 26. 이상근 |
| 협조자 | 기획예산담당관 예산담당 주무관 | 최대석 조형래 최미혜 | 행정담당 인사담당 | 김민정 박남숙 |

 고성군 새롭게 주민이 힘나게

고성군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민간위탁 및 수탁자 선정 계획(안)

개 요

- (위탁대상) 고성군공동육아나눔터 3호점
- (위 치) 고성군 고성읍 동외로 170-1
- (위탁기간) 2025. 1. ~ 2029. 12.(5년)
- (수탁기관) 사회복지법인, 비영리법인, 비영리단체
- (소요예산) 56,712천원 정도(국50%, 도15%, 군35%)
- (수탁자 심사 및 선정) 민간위탁심의위원회
- (추진방법 및 절차) 공개모집
 - 공개모집 공고 → 서류심사 → 선정심사위원회 심사
 - 선정 및 위탁계약 체결



고 성 군
(교육청소년과)

고성군공동육아나눔터 3호점

민간위탁 및 수탁자 선정 계획(안)

- 2025. 1월 고성군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개원에 따라 위탁체 선정으로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과 가족·공동체 육아기능을 보완하여 돌봄기능 강화에 만전을 다하고자 함.

I 관련근거

- 「아이돌봄지원법」 제19조(공동육아나눔터)
- 「고성군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(공동육아나눔터 위탁운영)
- 「저출산·고령화사회기본법」 제8조(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)
- 「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 제4조의 2(민간위탁사무의 내용)

II 추진방향

-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 선정으로 투명성 확보
-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적격한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심의·결정
- 공동육아나눔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탁체의 사업추진능력 고려·선정

III 위탁개요

- 시설현황

| 시설명 | 위치 | 면적 | 종사자 | 공간내용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|----|
| 고성군 공동육아 나눔터 3호점 | 고성군 고성읍 동외로 170-1 | 92.46㎡ | 2명 (전담1,보조1) | 양육 관련 정보 공유 및 열린 공동체 공간, 수유실 등 | |

※ 2024.12. 준공 / 2025. 1. 개소 예정

문서관리카드교육청소년과-23384 2/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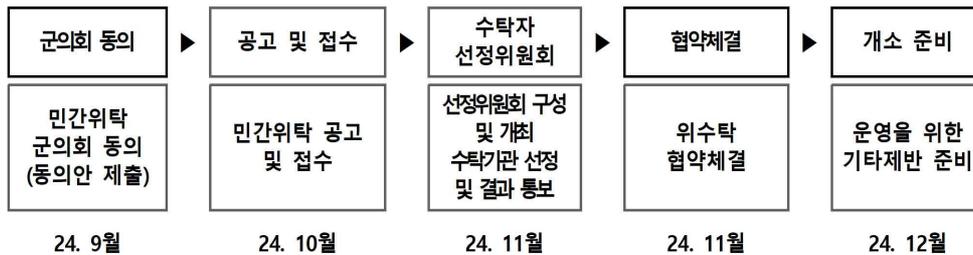
- 위탁기간: 2025. 1. 1 ~ 2029. 12. 31.(5년)
- 위탁내용: 고성군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관리·운영
- 소요예산: 56,712천원 정도(2024년 공동육아나눔터 내시 기준)

(단위: 천원)

| 계 | 인건비·운영비 | | | 비고 |
|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|
| | 국비 (50%) | 도비 (15%) | 군비 (35%) | |
| 56,712 | 28,356 | 8,507 | 19,849 | |

- 수탁자격: 사회복지법인, 비영리법인, 비영리민간단체
 - ※ 비영리민간단체: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
- 선정방법: 공개경쟁
 - 공개경쟁 → 서류심사 → 민간위탁심의위원회 등 심의
 - 최고·최저 제외한 평균점수 70점 이상 최다득점 위탁체
 - ※ 70점 미만시 재공고 실시, 동점 경우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, 수탁자의 적격성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

○ 위탁 추진절차



※ 상황에 따라 세부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.

- 위탁조건
 - 수탁기관은 아이돌봄지원법 및 기타 관계법령,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안내 지침, 위·수탁계약서 및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을 준수
 - 수탁기관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,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금지
 - 기타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서에 의함

IV**세부추진계획** **민간위탁 동의안 제출**

-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: 2024. 9월 임시회

 모집공고(예정)

- 공고(안): [붙임 1]
- 공고기간: 공고일로부터 접수마감까지 20일 이상
- 공고방법: 군 홈페이지, 공보 등
- 신청자격
 - 공고일 현재 법인 주사무소가 경상남도 고성군에 소재
 - ※ 공고 2회까지 고성군 소재 법인·단체의 신청 및 수탁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3회 차부터 신청자격을 경상남도로 확대함
 -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할 수 있는 재정능력과 전문성 활용이 가능한 사회복지법인, 비영리법인, 비영리민간단체
 - ※ 비영리민간단체: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
- 신청자격 제외대상
 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운영체
 - 「아동복지법」 제29조의3의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운영체
 - 최근 5년 이내 관련 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
 - 위탁체 명의로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
 -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
 - 수탁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「사회복지사업법」, 사회복지사업 근거 법률(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)에 따른 행정처분(시설장 교체 또는 업무(사업) 정지 이상)이나 벌칙을 받은 법인 및 단체
 -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

□ 모집 접수

- 접수장소: 고성군청 교육청소년과 보육돌봄담당
- 접수기간: 접수개시일로부터 7일 이상
- 접수방법: 방문 접수(우편, 인터넷 접수 불가)
- 제출서류: 위탁신청서 및 관련서류 [붙임 2]
 - 제출부수 서면심사(10권), 면접심사
 - ※ 평일 9:00~18:00까지 접수하며, 평일 12:00~13:00, 토, 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
- 기타사항: 위탁신청서 접수 결과 신청자가 모집 위탁체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행

□ 심사 및 선정

- 선정심사: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심의 위원회에서 심사 후 선정
 - 심사방법: 심사표에 의거 평가
 - 심사항목

| 구분 | 계 | 수탁자의 적격성 |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| 지역사회와 협력적 관계 조성능력 | 비고 |
|----|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배점 | 100 | 30 | 50 | 20 | |

- 세부심사기준: [붙임 3]
- 심사방법
 - 심사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병행
 - ※ 면접은 운영계획 등 설명(7분 이내)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
 -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, 최저점수는 접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평균 70점 이상 최고득점을 받은 위탁체로 선정
 - 신청자 모두 심사결과 평균점수 70점 미만인 경우 재공고
 - 심사결과가 동점인 경우에는 심사항목 중 ①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, ②수탁자의 적격성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

□ 결과 통지 및 위탁계약

- 선정결과 통보: 군 홈페이지에 선정결과 공고
- 위탁계약 체결
 - 주요 내용: 위탁 목적, 위탁기간, 위탁사업,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, 계약의 해지, 지도·감독에 필요한 사항 등
 - 위탁계약 체결 후 공증 및 이행(지급) 보증보험 제출
 - 고득점자가 위탁계약을 포기할 경우, 차점자로 결정

V

행정사항

- 2024. 8.: 고성군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민간위탁 및 위탁체 선정계획 수립
- 2024. 8.: 의회 민간위탁동의안 제출
- 2024. 9.: 위탁체 모집 공고(20일간) 및 신청서 접수
- 2024.10.: 서류심사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및 선정
위탁체 선정 공고 및 통지
- 2024.11.: 위·수탁 협약체결 및 공증

- 붙임 1. 공고문(안) 1부.
2. 신청서식 1부.
3. 수탁자 선정 심의기준 및 배점표 1부. 끝.

□ 아이돌봄지원법

제19조(공동육아나눔터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,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동육아나눔터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③ 제2항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
□ 공동육아나눔터 위탁 운영

제7조(공동육아나눔터 위탁 운영) ① 법 제19조에 따라 군수가 직접 운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 또는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장비,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,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.

□ 저출산·고령화사회기본법

제8조(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

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·지원하여야 한다.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□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) 군수는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2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3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